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도시건설위원회(주택정책과)

의안번호	제 93호
제 출 자	이용진 의원 외 9명(2023. 2. 9)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이 성 호

1. 제안이유

기존 조례가 그 대상을 경비 노동자에 국한하여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및 미화원 등 기타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확대하여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관리 노동자” 정의에 기존 경비원을 포함하여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미화원 등을 추가하여 보호 대상 확대(안 제2조)
- 다. 조례상 “경비노동자”를 “관리 노동자”로 명칭 변경(안 제1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나. 협조부서 : 주택정책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라. 입법예고 : 2023. 2. 9 ~ 2023. 2.14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국한된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 관리 노동자들로 확대하는 목적으로 발의 되었음.
- 성북구는 2023. 2월 현재 공동주택 172개 단지 1,127동에 81,586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성북구 홈페이지 참조)
이는 성북구 41% 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노동자는 3,6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됨
cf) 관리 노동자 수(22. 5. 5 아파트 관리신문 참조) : 의무관리대상 기준 103개단지, 953동 산출
- 최근 공동주택 아파트 근로 노동자에 대한 언론 보도 사항을 보면 입주민이 경비노동자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직원, 미화원 등에게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및 같은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에 따라 노동자의 부당 간섭, 인권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신설 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되고 있음.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제명 관련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경비 노동자에 국한된 인권 증진을 관리 노동자로 확대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인권 증진”으로 개정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안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경비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관리 노동자”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확대하여 새롭게 명시 함.
- 안 제1조 ~ 제7조 관련 : “경비노동자”를 “관리 노동자”로 전부 개정 함.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과 관련 전국 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 현황은 서울시를 비롯 광역 2곳, 기초 3곳, 등 총 5곳의 자치단체가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 확대 추진 될 것으로 예상 됨.

○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국한된 인권 보호를 관리 노동자로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동주택 내의 반복되는 입주민등의 갑질 방지 대책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 됨.

※ 관 계 법 령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 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